

1. 개정이유

개정법에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 취약선박’ 관련 규정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해양오염영향조사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
(안 제58조, 제59조, 별표14)

- 단기 영향 및 안정화 단계까지 추세를 파악하고 해양의 계절적 변동 요인을 포함하기 위해 1년 조사기간 동안 3개월마다 1회 조사토록 함

나. 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50조의2, 제89조, 제94조)

-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정의하는 조항의 위치를 이동하고 해양경찰서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다. 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령 정비
(안 제89조, 별표 19)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 관련 시행령 일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제58조제2항 중 “법 제77조제2항”을 “법 제7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3항”을 “법 제77조제4항”으로 한다.

제59조 중 “법 제78조”를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조사주기 및 법 제78조”로 한다.

제89조제4항제3호 중 “임명”을 “임명·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4조제5항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통지 및 배출방지조치

별표 14를 아래와 같이 한다..

해양오염영향조사 항목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제59조 관련)

분야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주기
자연환경	1. 기상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	3개월마다 1회
	2. 해류·조류		
	3. 해저지질		
생활환경	4. 해양환경 (수질·생물·퇴적물)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	3개월마다 1회
	5. 해양생태계		
	1. 연안 및 해역이용		
사회· 경제환경	2. 수산물의 안정성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	3개월마다 1회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1. 인구		
	2. 주거		
사회· 경제환경	3. 산업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	3개월마다 1회
	4. 어업현장		

비고

1.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물리·생화학적 특성 및 주변의 해역의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항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9 제2호자목 중 “임명”을 “임명·보유”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 및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u></p> <p><u>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u></p> <p><u>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유조선은 제외한다)</u></p> <p><u>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u></p> <p><u>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u></p>
<p>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생략)</p> <p>② <u>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u></p> <p>③ <u>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고가 발생한</u></p>	<p>제58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77조제3항</u>-----</p> <p>-----</p> <p>-----</p> <p>-----.</p> <p>③ <u>법 제77조제4항</u>-----</p> <p>-----</p>

날부터 3개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8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 14와 같다.

제89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의 임명,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5. (생략)

⑤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제59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조사주기 및 법 제78조
-----.

제89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
----- 임명·보유 -----

4.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p>⑥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유조선은 제외한다) 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 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 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p><삭 제></p>
<p>제94조(권한의 위임) ① ~ ④ (생략)</p> <p>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 16. (생략) ⑥·⑦ (생략) 	<p>제94조(권한의 위임)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 2. (현행과 같음) <p>2의2. 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통지 및 배출방지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 1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4]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

분야	조사항목	비고
자연환경	1. 기상 2. 해류·조류 3. 해저지질 4. 해양환경(수질·생물·퇴적물) 5. 해양생태계	
생활환경	1. 연안 및 해역이용 2. 수산물의 안정성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사회·경제환경	1. 인구 2. 주거 3. 산업 4. 어업현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

1. (생략)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 료 금액
가.~아. (생략)	(생략)	(생략)
자. 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제4항제5호	50
차.~쿠. (생략)	(생략)	(생략)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4]

해양오염영향조사 항목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제59조 관련)

분야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주기
자연환경	1. 기상 2. 해류·조류 3. 해저지질 4. 해양환경(수질·생물·퇴적물) 5. 해양생태계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	3개월마다 1회
생활환경	1. 연안 및 해역이용 2. 수산물의 안정성 3. 공공시설의 오염피해		
사회·경제환경	1. 인구 2. 주거 3. 산업 4. 어업현장		

비고

1.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물리·생화학적 특성 및 주변의 해역의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항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

1. (생략)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아.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자. 법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보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2조제4항제5호	50
차.~쿠. (생략)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